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안 4건

검 토 보 고

<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등 >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008호)
-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719호)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984호)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220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총괄적 검토	11
1. 제정안의 입법배경	11
2. 제정안의 체계	15
3. 총괄 검토의견	18
4.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22
III . 주요 내용별 검토	24
1. 총칙	24
2.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보상심의위원회 등	30
3. 진상규명조사 및 피해자 결정 등	40
4. 피해자 보상·지원	45
5. 명예회복 및 사회적 치유	58
6. 보칙 및 벌칙 등	67

I. 개요

1.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400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훈기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11. 7.

(3) 회 부 일 : 2026. 7. 31.

나. 제안이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는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국가배상법」 및 「민법」의 손해배상 규정 외에 형제복지원·선감학원 등 집단수용시설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법적 구제 수단은 부재함.

또한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영화숙·재생원, 덕성원 등 전국의 집단수용시설에서 강제수용, 폭행, 성범죄, 강제노역, 열악한 생활환경, 교육권 침해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피해자들과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지원한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 추모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피해자와 유족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집단수용시설인권침해보상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
- 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라.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고, 이를 지급 받을 권리는 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추모하고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의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기 위하여 추모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22조).
- 바. 직무를 수행하는 집단수용시설인권침해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및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7조).

2.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771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남인순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3. 25.

(3) 회 부 일 : 2026. 7. 31.

나. 제안이유

국가는 장애인·아동·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하여 배려·지원을 하여야 함에도, 강제로 집단수용시설에 수용하는 등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기도 하였음.

집단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사례로 세상에 알려진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이후, 선감학원, 영화숙·재생원, 덕성원 등 전국의 집단수용시설에서 자행된 강제수용, 폭행, 성범죄, 강제노역, 열악한 생활환경, 교육권 침해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계속하여 밝혀지고 있으며, 강제수용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또한 입양과정에서 입양알선기관에 의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역시 그 피해자들에게 현재까지도 크나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남기고 있음.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인권침해 사실이 일부 밝혀졌으나,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에서 소외되어 있음. 특히

진실규명결정 이후에도 고령 등으로 인해 국가배상소송 과정에서 사망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음.

UN 고문방지위원회는 2024년 우리나라 정부에 "시설수용의 모든 피해자들이 공식적인 진정을 제기하지 않고도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법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음.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덕성원, 영화숙·재생원 피해자들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으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개별 시설별 법률 제정이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시키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피해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진실규명과 피해회복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보장함(안 제4조).

나. 신속하고 실효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소송 없이도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내지 제21조).

다.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의 재산관리를 지원함(안 제22조).

라. 명예회복, 추모사업, 인권교육을 통해 사회적 치유와 재발방지를 도모함(안 제25조).

마. 차별과 낙인을 방지하고,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함(안 제26조 및 제27조).

3.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798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3. 31.

(3) 회 부 일 : 2026. 7. 31.

나. 제안이유

근대화 과정에서 아동·장애인·노인·부랑인·정신질환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집단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되고 그 과정에서 폭력과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 확인됨.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을 통해 피해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받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2024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시설수용 피해자들이 별도의 공식 진정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효과적인 구제와 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아울러 피해자들은 장기간의 시설수용으로 인해 지역사회 정착이나 재산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단순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의료·생활·자립지원 및 재산관리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

따라서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신속한 보상과 실효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였거나 지원·관리·감독한 민간기관이 운영하였던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에 따라 피해자의 신속한 명예회복과 실질적 피해회복, 재발 방지 및 사회적 치유를 실현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한 삶과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피해회복,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피해자등의 권리를 보장하며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다.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라. 피해자등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의 신청과 지급결정,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 마.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집단수용시설등에서의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음(안 제23조).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추모하고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의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기 위하여 추모·기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24조).
- 사. 피해자들의 심리적 회복 및 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피해회복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피해회복지원센터를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26조).

4.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022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18인

(2) 제 안 일 : 2026. 7. 29.

(3) 회 부 일 : 2026. 7. 31.

나. 제안이유

근대화 과정에서 아동·장애인·노인·부랑인·정신질환자 등 사회취약 계층이 집단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되고 그 과정에서 폭력과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 확인됨.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을 통해 피해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받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2024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시설수용 피해자들이 별도의 공식 진정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효과적인 구제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아울러 피해자들은 장기간의 시설수용으로 인해 지역사회 정착이나 재산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단순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의료·생활·자립지원 및 재산관리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

따라서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와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였거나 지원·관리·감독한 민간기관이 운영하였던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진상규명결정에 따라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 피해회복, 재발방지 및 사회적 치유를 실현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한 삶과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회복,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다. 집단수용시설 등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를 둠(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라.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진상규명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와 피해자들의 결정을 의결로써 결정함(안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마.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는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공유수면 등을 조사·발굴할 수 있음(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바. 피해자의 직권결정, 피해자 명예회복 및 피해자등에 대한 보상의 신청과 지급결정,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7조부터 제44조까지).

사. 피해자등의 심리적 회복 및 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피해회복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피해회복지원센터를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46조).

아.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는 집단수용시설등에서의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음(안 제47조).

자. 위원회는 운영법인등의 존속 또는 동일성·승계 여부를 심사·의결하여 관계 기관에 행정 조치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안 제48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추모하고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의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기 위하여 추모·기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49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을 위하여 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51조).

II. 총괄적 검토

1. 제정안의 입법 배경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는 역할을 수행함.

□ 2020년 구성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5년 11월 27일 결과보고서 제출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하였으며, 청산기한인 2026년 2월 26일을 기점으로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여 현재 활동중에 있음.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과거 부랑아 근절대책, 내무부훈령 등에 따라 사회 안정을 명목으로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내지 정부의 묵인 아래 아동·부랑자 등을 대상으로 집단수용시설 강제수용, 구타 및 강제노역 등의 인권침해 행위가 자행되었음.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1,550명의 집단수용시설 및 해외입양 피해자를 결정하였으며, 3기 진실화해위원회에도 2026년 7월말 기준 2,075명이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되어 있음.

< 진실화해위 2기 진실규명 결정자 및 3기 진실규명 신청자 현황 >

구분	계	집단수용시설	해외입양
피해자 결정 현황(2기 진화위)	1,550명	1,494명	56명
피해자 신청 현황(3기 진화위)	2,075명	1,557명	518명

-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 집단수용시설(형제복지원 등 11건) 및 해외입양 관련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 보상, 트라우마 치유 및 관리, 사회적 기억확산(추모) 등의 피해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였음.

< 인권침해 사건별 피해회복 지원에 대한 진화위 권고 사항 >

- **형제복지원(22.8.23. 결정)·덕성원 인권침해 사건(24.10.8. 결정)** :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
- **서울시립강생원 등 성인부랑인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24.9.6 결정)** : 진실화해위가 규명한 다른 집단수용시설까지 아우르는 대책 또는 특별법 제정에 준하는 대책 마련
-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25.2.25 결정)** : 피해자의 공식적인 진정 없이 피해자 구제 및 배상을 할 수 있는 법 개정
- **진화위 종합권고(2025.11.14. 결정)** : 피해자 및 유족의 트라우마 치유,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 자립 지원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또한, 개정된 「과거사정리법」('26.2.26. 시행) 제50조는 국가로 하여금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족의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및 그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면서,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범위 및 종류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과거사정리법」은 보상의 원칙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범위·절차 등은 별도의 법률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위한 별도의

1) 「과거사정리법」 제50조 ① 국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족의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및 그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범위 및 종류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입법이 필요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위한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심사과정에서 동법 내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보상 관련 사항은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규정하기로 하였음.²⁾

< 집단수용시설 등 과거사 사건 현황 >

사건명	대상	지역	사건 주요내용	진화위 진실규명
계				1,550명
① 선감학원	아동	경기	▶(시기) '46(경기도 이관)~'82(폐쇄) ▶(개요) 선감도(경기도 안산) 내 아동 강제 수용 및 노역, 가혹행위 등 ▶(권고) 국가 사과, 유해 발굴, 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	230명
② 형제복지원	노숙인	부산	▶(시기)'60(설립)~'92(폐쇄) ▶(개요) 부랑인 아동 강제 수용, 노역, 가혹행위, 대규모 사망 등 ▶(권고) 국가 사과,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643명
③ 서산개척단	노숙인	충남	▶(시기)'61(설립)~'66(서산군 이관) ▶(개요) 갯벌 간척사업 강제 동원, 강제 결혼, 토지 미분배 등 ▶(권고) 국가 사과, 경제적 보상	299명
④ 서울시 부랑아시설 (어린이마을)	아동	서울	▶(시기)'75(시립아동보호소에서 개명)~ * 꿈나무마을초록꿈터 명칭변경 ▶(개요) 부랑아 무단 위탁 수용, 노역, 가혹행위, 영양 실조 등 ▶(권고) 국가 사과, 아동복지시설 관리 감독 및 인권 교육 강화	1명
⑤ 서울동부 여 자 기 술 원 등 ²⁾	여성	서울	▶(시기)'62(개소)~'98(폐쇄) ▶(개요) 윤락여성 선도 등 명분으로 여성 강제 수용, 노역, 가혹행위 등 ▶(권고) 국가 사과, 피해회복 조치	11명
⑥ 서울시립 갱생원 등 ³⁾	노숙인	서울	▶(시기)'61(개소)~'11 * 운영권 이관(현재 운영 중) ▶(개요) 부랑인 강제 수용, 노역, 가혹행위, 시설간 강제전원 등 ▶(권고) 국가 사과, 피해보상, 조사활동 제도화, 트라우마 치유	55명
⑦ 서울희망 소년원	아동	서울	▶(시기)'63(개소)~'06(지정 취소) ▶(개요) 부랑아 강제 수용, 노역, 가혹행위, 굶주림 등 ▶(권고) 국가 사과 및 피해회복조치	2명

2) 제429회(정기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2025.11.20.

사건명	대상	지역	사건 주요내용	진화위 진실규명
⑧ 부산 덕성원	아동	부산	▶ (시기)'57(개소)~'01(폐쇄) * 유사시설(은화요양병원) 운영 중 * '70~'80년대 주로 발생 ▶ (개요) 부랑아 강제 수용, 노역, 가혹행위, 교육받을 권리 침해 등 ▶ (권고) 국가 사과 및 피해회복 조치	46명
⑨ 목포 동명원	아동	전남	▶ (시기)'67(개소)~'13 * 노숙인재활시설로 변경, 현재 운영 중 ▶ (개요) 부랑아 강제수용, 사유지 강제 노역, 가혹행위, 성폭력 등 ▶ (권고) 국가 사과, 피해보상, 조사활동 제도화, 트라우마 치유	7명
⑩ 영화숙·재생원	아동 노숙인	부산	▶ (시기)'61(개소)~'76(설립 취소) ▶ (개요) 부랑인 강제수용, 노역, 가혹행위, 부실 급식, 성폭력 등 ▶ (권고) 국가 사과, 피해회복 지원, 트라우마 치료, 유해발굴	181명
⑪ 서울시립아동 보호소	아동	서울	▶ (시기)'58(개소)~'75(설립 취소) ▶ (개요) 미아 강제 수용, 노역, 가혹행위, 강제 전원 등 ▶ (권고) 국가 사과, 피해회복 지원, 유사피해 방지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인권 교육 자료개발 * 아동복지법, 행정절차법 등	19명
⑫ 해외입양	아동	전국	▶ (시기) 불명('55년 이전 기록 부재)~'99 ▶ (개요) 경제적 이익 창출, 빈곤층 관리 위해 국가가 해외 입양 적극 주도 ▶ (권고) 국가 사과, 진상 규명, 가족상봉 전담조직, 헤이그협약 비준	56명

2. 제정안의 체계

□ 각 제정안은 총 4장 내지 7장, 부칙 포함 28개 내지 6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총칙, 위원회 관련 사항, 보상 및 명예회복, 기타 보칙에 관한 장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김미애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장을 마련하고 있음.

<제정안의 조문 구성>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미애의원안, '26.7.29. 발의)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예지의원안, '26.3.31. 발의)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 (남인순의원안, '26.3.25. 발의)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특별법안 (이훈기의원안, '25.11.7. 발의)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피해자등의 권리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의 책무 제2장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및 명예회복위원회 제5조 집단수용시설등인 권침해사건진상규명및 명예회복위원회의 설치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위원회 직무상 독 립과 신분보장 제8조 위원회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 제9조 소위원회의 설치 제3장 진상규명조사 및 청문회 제10조 진상규명결정의 활용 등 제11조 진상규명의 신청 제12조 신청의 방식 제13조 신청의 각하 제14조 조사의 개시 제15조 조사의 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피해자등의 권리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의 책무 제2장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제5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6조 위원회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 제7조 심의위원회의 심 의·의결 등 제8조 사실조사 제9조 피해자등의 의견청 취 제10조 위원 등의 보호 제11조 국가기관 등의 협 조 의무 제3장 보상등 제12조 보상등의 신청 제13조 보상등의 지급결 정 제14조 결정서의 송달 제15조 재심의 제16조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등의 지급 등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유족의 범위 제4조 피해자등의 권리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의 책무 제2장 진실규명 결정 및 보상 제6조 보상심의위원회 제7조 사무국의 설치 제8조 보상금등의 지급 제9조 사실조사 등 제10조 위원 등의 보호 제11조 국가기관 등의 협 조 의무 제12조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제13조 신청인의 진술권 제14조 지급결정 제15조 결정서의 송달 제16조 재심의 제17조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 등의 지급 등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제19조 임시지급 및 정산 제20조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유족의 범위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의 책무 제2장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보상심의위원회 제5조 집단수용시설인권 침해보상심의위원회 제6조 사무국의 설치 제7조 사실조사 등 제8조 위원 등의 보호 제3장 보상 등 제9조 보상금 제10조 의료지원금 제11조 생활지원금 제12조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제13조 지급결정 제14조 결정서의 송달 제15조 재심의 제16조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 등의 지급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제18조 임시지급 및 정산 제19조 국가의 손해배상

제16조 동행명령 제17조 증거보전의 특례 제18조 청문회 제19조 조사의 기간 제20조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 제21조 결정의 통지·이의의 신청 및 결과보고서 제22조 국가기관 등의 협조 의무 및 업무 위탁 제4장 유해의 조사·발굴 및 손실보상 제23조 유해의 조사·발굴 등 제24조 유전자 검사 제25조 손실보상 제26조 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제5장 피해자 결정 및 피해자 보상 등 제27조 피해자 직권결정 제28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제29조 피해자 명예회복 제30조 보상금등 제31조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제32조 지급결정 및 진술권 제33조 결정서 송달 제34조 재심의 제35조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제36조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등과의관계 제37조 보상금등의 분할 지급 및 재산관리 교육 등 제38조 임시지급 및 정산 제39조 보상금등 상속의 특례 및 보호 제40조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제41조 보상금등의 관리 제42조 보상금등의 환수 제43조 구상권의 행사 제44조 시효 제6장 명예회복 및 사회적 치유 제45조 집단수용시설 등 인권침해사건 과거사지원단 제46조 피해회복지원센터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제18조 임시지급 및 정산 제19조 보상금등 상속의 특례 제20조 보상금등의 관리 제21조 보상금등의 보호 제22조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제4장 명예회복 및 사회적 치유 제23조 재발방지 대책의 권고 등 제24조 추모·기념사업 등 제25조 차별·혐오 금지 제26조 피해회복지원센터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27조 비밀준수 의무 제28조 자격사칭 금지 제29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0조 피해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제3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2조 벌칙 제33조 과태료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제3조 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소멸시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조 경과조치	제21조 보상금등 상속의 특례 제22조 보상금등의 관리 제23조 보상금등의 보호 제24조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제3장 명예회복 및 사회적 치유 제25조 추모·기념사업 및 공익기금조성 등 제26조 차별·혐오 금지 제27조 피해회복지원센터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28조 비밀준수 의무 제29조 자격사칭 금지 제30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1조 피해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제3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 벌칙 제34조 과태료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제3조 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조 경과조치	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제20조 보상금등의 보호 제21조 소멸시효 제4장 추모사업 등 제22조 추모사업 등 제23조 피해회복지원센터 제5장 보칙 제24조 비밀준수 의무 제25조 자격사칭 금지 등 제2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27조 벌칙 제28조 과태료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	---	---	---

제47조 재발방지 대책의 권고 등 제48조 집단수용시설등 운영법인 등의 존속 또 는 동일성·승계 심사 등 제49조 추모·기념사업 제50조 공익기금의 조성 제51조 주거·의료복지시 설의 설치 제52조 차별·혐오 금지 제7장 보칙 및 벌칙 제53조 피해자등의 의견 청취 제54조 위원 등의 보호 제55조 비밀준수 의무 제56조 고유식별정보 등 의 처리 제57조 자격사칭 및 유사 명칭 사용 금지 등 제58조 불이익 처우 금지 제59조 벌칙 적용에서 공 무원 의제 제60조 벌칙 제61조 과태료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제3조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소멸시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조 경과조치			
--	--	--	--

3. 총괄 검토의견

□ 제정안은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 또는 보상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실시하려는 것임.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금등의 지급 등을 통해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2기 진실화해위원회도 집단수용시설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특별법 제정 등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회복·지원 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음. 제정안은 이러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도 입법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또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은 그 자체로 보상금 지급의 집행권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 또는 유족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진실규명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법상 보상 절차를 마련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피해자 지원 및 보상 절차와 별도로 제정안이 독자적인 진상규명기구와 조사절차를 두는 것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6년 2월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진상규명 절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정 절차와 대상 및 기능 면에서 중복될 우려가 있음.

더욱이 두 절차가 병행될 경우, 조사 범위·사실인정 등에 관하여 서로 다른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이 경우 진실규명 또는 피해자 결정의 효력, 보상 대상의 확정 및 지원절차의 적용 등을 둘러싸고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정안의 진상규명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전제로 별도의 보상·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과거사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지원입법의 방식도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집단수용시설 등 과거사 사건 관련 법률안 7건 중 4건은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피해자를 포괄하여 지원하려는 취지의 법률안인 반면, 나머지 3건은 덕성원 사건 등 특정 개별사건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정안임.

<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유사 제정법률안 >

구분	의안번호	제명	발의자
집단수용 시설등 일괄	14008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특별법안	이훈기의원 등 12인
	17719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17984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20220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미애의원 등 18인
개별사건	6904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44인
	6944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재강·용혜인·이성권의원 등 23인
	11420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2인

개별 사안별로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은 유사한 성격의 시설 인권침해 피해 중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다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피해 인정, 보상금등의 산정, 신청·심의·결정 및 불복절차 등이 사건별 법률에 따라 달라질 경우 제도 운영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유사한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포괄하여 일관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통합적 입법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제정안에 따라 보상금등이 지급되는 경우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³⁾ 재정 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둘째, 행정안전부가 과거사 문제해결 통합·조정 로드맵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체계적인 과거사 정리 로드맵을 마련하고,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를 정리하여, 배·보상 기준과 금액 등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제도를 과거사 전반에 걸쳐 일괄 정비(입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는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결정 이후 피해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관련 규정이 없어 개별 입법이 필요한 상황에 대응하여,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

3)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결정에 따른 보상 규정 도입 시 보상비용은 최소 1조 462억원에서 최대 1조 7,163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음.

한 일반법적 성격을 지닌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
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18039호)도
발의되어 있는바, 동 법률안의 심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도 있음.

4.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과거 집단수용시설과 해외입양 관련 인권침해사건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공감함.

- 사건발생 50년 이상 경과되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생존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장기간 지속된 바, 피해자 고통 경감을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함.
- 참고로, 2기 진화위('21.5~'25.11.)는 과거 집단수용시설(형제복지원 등 11건) 및 해외입양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를 우리부에 권고하였음.
- 또한, 「과거사정리법」 개정('26.2.26. 시행)에 따라 진화위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및 국가의 명예회복 조치가 의무화되었음.

다만, 진상규명 관련 조항은 「과거사정리법」 개정('26.2.26.시행)으로 3기 진화위가 출범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위원회가 행정기관·개인·기업 및 단체 등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거나,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에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및 수집 목적 외 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59조 및 제71조에서 이미 금지(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하고 있음.

제정안의 벌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 수위에 비해 현저히 낮아 법적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밀준수의 의무와 관련하여 비밀 중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집단 민원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국비보조(지원) 근거 조항의 신설이 필수적임.

□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인 지원·회복 모임) 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지지하며, 진실화해위원회가 인권침해로 인정한 사건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배보상 처리의 효율성과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해 개별사건에 대한 특별법보다는 전체 집단수용시설 피해를 아우르는 법안이 필요함.

Ⅲ. 주요 내용별 검토

1. 총칙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지원한 집단수용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결정 이후 신속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 피해회복, 재발 방지 및 사회적 치유를 실현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한 삶과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집단수용시설, 피해자 및 유족 등의 개념을 정의하며, 피해자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미애의원안, '26.7.29. 발의)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예지의의원안, '26.3.31. 발의)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 (남인순의원안, '26.3.25. 발의)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특별법안 (이훈기의의원안, '25.11.7. 발의)
제1조(목적) 이 법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였거나 지원·관리·감독한 민간기관이 운영하였던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실질적 피해회복, 재발 방지 및 사회적 치유를 실현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한 삶	제1조(목적) 이 법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였거나 지원·관리·감독한 민간기관이 운영하였던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에 따라 피해자의 신속한 명예회복과 실질적 피해회복, 재발 방지 및 사회적 치유를 실현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한 삶과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함을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지원한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또는 입양알선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 이후 신속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 피해회복, 재발 방지 및 사회적 치유를 실현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한 삶과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지원한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 추모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수용시설등”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하거나 지원을 받아 아동, 장애인, 노인, 부랑인, 정신질환자 등을 수용하여 운영하거나 운영하였던 사회복지시설 및 집단수용시설을 말한다. 2.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이란 1945년 8월 15일부터 집단수용시설등에서 벌어진 불법·부당한 감금, 수용, 폭력, 노역, 성폭력 등으로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 정신적 장애 및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해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수용시설등”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관리·감독한 민간기관이 아동, 장애인, 노인, 부랑인, 정신질환자 등을 수용하여 운영하거나 운영하였던 사회복지시설 및 집단수용시설 등을 말한다. 2.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이란 1945년 8월 15일부터 집단수용시설등에서 벌어진 불법·부당한 감금, 수용, 폭력, 노역 등으로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 의하여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으로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에서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로서 「진실·화해를 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수용시설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하거나 지원을 받아 아동, 장애인, 노인, 부랑인, 정신질환자 등을 수용하여 운영하거나 운영하였던 시설 나. 입양을 알선하거나 알선하였던 기관 2.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사건”이란 일제강점기 이후 집단수용시설등에서 벌어진 불법·부당한 감금, 수용, 폭력, 노역 등으로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및 집단수용시설등에 의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으로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된 사건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진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수용시설”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하거나 지원을 받은 자가 아동, 장애인, 노인, 부랑인, 정신질환자 등을 수용하여 운영하거나 운영하였던 시설을 말한다. 2.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이란 일제강점기 이후 집단수용시설에서 벌어진 불법·부당한 감금, 수용, 폭력, 노역 등으로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에서 진실규명된 사건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집단수용시설

나. 제21조에 따라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가 진상규명결정으로 피해자로 결정한 사람 다. 제27조에 따라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가 직권으로 피해자로 결정한 사람	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해자를 말한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진실규명결정을 통보 받은 자를 말한다.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하여 상이(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다.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제2조(정의) 4. “유족”이란 사망한 피해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보며,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피해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후 다른 사람과 혼인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제2조(정의) 4. “유족”이란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피해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후 다른 사람과 혼인하거나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피해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유족 중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관련자와 혼인 또는 사실상 혼인 후 그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민법」에 따른 피해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와 혼인 또는 사실상 혼인 후 그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피해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에는 「민법」에 따른 배우자의 재산상 속분으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3조(피해자등의 권리) 피해자와 유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2.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3. 진상규명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 4. 기억, 추모, 애도를 하거나 받을 권리 5. 배상·보상 및 실질적 피해회복을 받을 권리 6. 생활지원·의료지원·심리치료지원·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7. 추모사업·공동체 회복사업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등 참여할 권리 8. 그 밖에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등의 권리	제3조(피해자등의 권리) 피해자와 유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2.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3. 기억, 추모, 애도를 하거나 받을 권리 4. 배상·보상 및 실질적 피해회복을 받을 권리 5. 생활지원·의료지원·심리치료지원·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6. 추모사업·공동체 회복사업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등 참여할 권리 7. 그 밖에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등의 권리	제4조(피해자등의 권리) 피해자등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3. 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4. 배상·보상 및 실질적 피해회복을 받을 권리 5. 생활지원·의료지원·심리치료지원·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6. 추모사업·공동체 회복사업 등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피해회복, 재발방지를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피해회복, 재발방지를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구제, 재발방지를 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 법에 따른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심리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 법에 따른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심리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진실규명 및 보상심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다시 심리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키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	--

나. 검토의견

- 목적조항의 경우 김미애의원안은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실질적 피해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김예지의원안과 남인숙의원안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훈기의원안은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음.

총괄적 검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진상규명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역할로 두고 이후의 명예 및 피해 회복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정의조항과 관련하여 제정안들은 “피해자”와 “유족”을 과거사정리

법 등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김미애의원안 제10조제3항에서는 진실규명결정을 받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를 일반적 의미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 동 조항을 존치할 경우 용어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이훈기의원안은 피해자의 범위를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행방불명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본인의 의사에 반한 수용, 강제노역, 폭행 및 교육 기회의 박탈 등 그 자체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 한편 이훈기의원안을 제외한 나머지 제정안들은 피해자들의 권리 조항을 마련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는 동 제정법안 및 기존 관련 법률을 통해 보장되는 권리를 선언적 의미로 표시한 것으로 제정의 실익이 크지 아니할 것으로 보임.

2.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보상심의위원회 등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들은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 보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결격사유, 사무국의 설치 및 사실조사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조항들을 마련하고 있음.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미애의원안, '26.7.29. 발의)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예지의원안, '26.3.31. 발의)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 (남인순의원안, '26.3.25. 발의)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특별법안 (이훈기의원안, '25.11.7. 발의)
제5조(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의 설치) ①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제7조(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① 심의위원회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기초로 신속하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2조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에 관한 사항 2. 제18조에 따른 임시지급에 관한 사항 3. 제23조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의 권고에 관한 사항 4. 피해자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항 가. 의료지원 서비스	제6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등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기초로 신속하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8조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제19조에 따른 임시지급에 관한 사항 3. 집단수용시설등 관련 정책에 관한	제5조(집단수용시설인권침해보상심의위원회) ① 피해자와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집단수용시설인권침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제18조에 따른 임시지급에 관한 사항

사항 2.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3. 유해의 조사·발굴에 관한 사항 4. 피해자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5.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에 관한 사항 6.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자립정착금 등 보상 및 지원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7. 재발방지 대책의 권고 및 그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8. 진상규명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9. 집단수용시설등을 운영하였던 법인등의 존속 또는 동일성·승계 여부의 심사와 관계기관에 대한 조치 권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진상규명·명예회복 및 피해회복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생활지원 서비스 다. 자립정착 지원 서비스 라. 그 밖에 피해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서비스 5.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및 집단수용시설등에서의 인권침해 방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제1호·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경우 피해 및 후유증의 정도, 수용기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민간단체,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검토, 인권 교육의 확대 등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피	제6조(보상심의위원회)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	제5조(집단수용시설인권침해보상심의위원회)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3.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4. 국가폭력 사건 피해회복과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무부,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3. 국가폭력 사건 피해회복과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법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재정경제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4. 보상업무를 포함한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법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재정경제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4. 보상 업무 등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사무국은 제21조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 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⑤ 심의위원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제7조(사무국의 설치)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사무국의 설치)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구성 및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1. 진상규명 소위원회 2. 보상심의 소위원회 ② 소위원회의 조직·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심의·의결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심의·의결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의		

	결 대상인 안전에 관하여 증언·감정 또는 자문하는 경우 ④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서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사실조사) ① 심의위원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조사를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제9조(사실조사 등) ① 심의위원회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제7조(사실조사 등) ① 심의위원회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

	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하려는 사실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자나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행정기관, 기업, 단체 및 개인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3조(피해자등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보상기준의 결정, 추모·기념사업 및 재발방지 대책의 권고 등이 법의 시행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피해자등 또는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등의 의견청취) 심의위원회는 보상기준의 결정, 추모·기념사업 및 재발방지 대책의 권고 등이 법의 시행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피해자, 유족 또는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4조(위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직원	제10조(위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직원	제10조(위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직원	제8조(위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0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는 것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직원에게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심의위원회의 위원·직원에게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8조에 따른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는 것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 또는 협박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위원·직원에게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이나 위계로써 제9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9조에 따른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심의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제22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및 업무위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고 조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관계 기관·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심의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심의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심의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보상심의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	

나. 검토의견

- 제정안들은 위원회의 명칭을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또는 ‘집단수용시설인권침해보상심의위원회’ 등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이 설치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명칭은 그 역할에 진상규명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진상규명’ 포함 여부를 달리 결정하되, 일반적인 ‘보상심의위원회’ 보다 동 위원회의 역할을 나타낼 수 있는 구체적인 명칭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법관(또는 법률전문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김예지의원안 제외), 고위공무원, 국가폭력사건 피해회복(또는 보상업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데, 김미애의원안과 김예지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피해자 단체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할 경우 위원회 운영 및 관련 사항의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과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제정안들은 위원회로 하여금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 회의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음. 의결정족수는 위원회 의사 결

정의 중요한 절차라는 점에서,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3. 진상규명조사 및 피해자 결정 등

가. 제정안의 내용

□ 김미애의원안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이라도 보상·지원에 필요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가 진상규명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진상규명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진상규명의 신청, 조사의 개시 및 방법, 동행명령 및 청문회 등 진상규명조사를 위한 절차적 규정도 함께 마련하고 있음.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미애의원안, '26.7.29. 발의)	
제10조(진실규명결정의 활용 등)	① 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이하 이 조에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그 결정을 기초로 제5장 및 제6장에 따른 보상·지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② 위원회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이라도 보상·지원에 필요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장에 따른 진상규명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장에 따라 위원회가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11조(진상규명의 신청)	① 피해자등,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이 기간 이내에 신청이 완료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국무총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신청의 방식)	① 제11조에 따른 조사의 신청(이하 “신청”이라 한다)은 신청인의 성명·주소,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말로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신청의 각하)	① 위원회는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 1. 신청이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제14조(조사의 개시) ① 위원회는 신청이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청인,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신청인,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4.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6.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지조사 ②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및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제6호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의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결로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물건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16조(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청문회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유효기간 및 거부 시 과태료 부과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은 이를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집행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에게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제17조(증거보전의 특례) 위원회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의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청문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

- 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청문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조사의 기간) ① 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최초의 조사개시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진상규명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국무총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진상규명 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

제20조(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 ①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그 조사결과와 피해자들의 결정을 의결로써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결과 진상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상규명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1조(결정의 통지·이의신청 및 결과보고서) ①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14조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제20조에 따른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피해자, 제12조에 따른 신청인 및 제15조에 따른 참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른 진상규명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유해의 조사·발굴 등) ① 위원회는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공유수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조사·발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농작물·나무 등의 장애물을 제거·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토지등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제3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이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이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제23조제5항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유해를 조사·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발굴 과정에서 매장유산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에 피해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해를 조사·발굴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발굴된 유해가 피해자의 유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유해의 발굴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피해자 유해의 인정 기준·절차와 신원확인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유전자 검사) 위원회는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발굴된 유해의 신원과 행방불명자의 가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굴된 유해와 그 가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손실보상) ① 위원회는 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타인 토지등에의 출입·땅파기 등 일시 사용이나 농작물·과수 등의 피해에 따른 손실. 다만, 땅파기 후 원상복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유해의 조사·발굴 업무에 따라 타인에게 발생한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피해자 직권결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집단수용시설 등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을 직권으로 피해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상자(대상자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제21조에 따른 진상규명 결과보고서에 명시된 사람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된 사건의 피해자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동의를 방법 및 절차, 대상자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통지·동이가 불가능한 경우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김미애의원안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법의 위원회에도 진상규명 기능을 추가로 부여하려는 것으로 보임.
- 현재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2026년 2월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진상규명 절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에 따른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정 절차와 대상 및 기능 면에서 중복될 우려가 있음.

더욱이 두 절차가 병행될 경우, 조사 범위·사실인정 등에 관하여 서로 다른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이 경우 진실규명 또는 피해자 결정의 효력, 보상 대상의 확정 및 지원절차의 적용 등을 둘러싸고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정안의 진실규명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4. 피해자 보상·지원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들은 보상금등의 종류, 지급절차,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과의 관계,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보상금등 상속 특례, 보상금등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미애의원안, '26.7.29. 발의)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예지의의원안, '26.3.31. 발의)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 (남인순의원안, '26.3.25. 발의)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특별법안 (이훈기의의원안, '25.11.7. 발의)
제30조(보상금등) ① 국가는 피해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금원(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상금 2. 의료지원금 3. 생활지원금 4. 자립정착금 5. 그 밖에 피해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금원 ②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③ 보상금등의 구체적인 산정기준·금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별도 보상금 등에 대한 조문은 없으며,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	제8조(보상금등의 지급)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원(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상금 2. 의료지원금 3. 생활지원금 4. 자립정착금 5. 그 밖에 피해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금원 ③ 보상금등은 피해의 정도, 후유증의 정도, 수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다만,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의	제9조(보상금) 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 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피해자의 유족: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여,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單割引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2.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으로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배우자의 재산 상속분으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인하여 상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여,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여,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 상실을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② 상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월급여,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公信力)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할 때에
--	--	--	---

			는 월급여,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를 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애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료지원금) ① 상이를 입은 피해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補裝具)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제 드는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 ③ 상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그 사람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생활지원금) ①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보상금	제12조(보상등의 신청) ① 배상 또는 보상	제12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① 보상금등	제12조(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① 이 법에

등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거나 제21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후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지급결정 및 진술권) ② 신청인은 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보상금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하 “보상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등의 신청은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송달받은 후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질병, 장애, 거주불명, 국외거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보상등의 지급 결정) ②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보상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송달받은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신청인의 진술권)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보상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따른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보상금등의 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2조(지급결정 및 진술권) ①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의결로써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결정서 송달) ① 위원회는 보상금등	제13조(보상등의 지급 결정) ① 심의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의결로써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이하 “지급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결정서의 송달) ① 심의위원회가 보	제14조(지급결정) 심의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결정서의 송달) ① 심의위원회가 보	제13조(지급결정) 심의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결정서의 송달) ① 심의위원회가 보상금등의 지급 여부 및

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금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재심의) ① 제32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33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2조 중 “120일”은 “30일”로 본다.	제15조(재심의) ①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4조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의를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중 “120일”은 “30일”로 본다.	제16조(재심의) ① 제14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5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중 “120일”은 “30일”로 본다.	제15조(재심의) ① 제14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같은 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중 “120일”은 “30일”로 본다.
제35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제33조에 따라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등) ① 제14조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에 보상금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지급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제15조에 따른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신청인이 제14조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철회한	제17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 등의 지급등) ① 보상금등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제15조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상금등의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신청인이 보상금	제16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등) ① 보상금등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상금등의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신청인이 보상금등의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의위원회에 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철회

	것으로 본다. ③ 그 밖에 보상등의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의 지급 결정서正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의위원회에 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한 것으로 본다.
제36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등과의 관계) ①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시금으로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받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시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금액을 고려하여 제30조 제1항제1호의 보상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생활지원금, 의료지원 등 계속적·정기적인 지원은 제1항에 따른 차감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등과의 관계) ①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시금으로 지급된 배상금 또는 보상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시금으로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금액을 고려하여 제7조제1항제1호의 보상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생활지원금, 의료지원 등 계속적·정기적인 지원은 제1항에 따른 차감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①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 또는 보상을 받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①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 또는 보상을 받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임시지급 및 정산) ① 위원회는 신청인의 서면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일부를 임시로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결정(이하	제18조(임시지급 및 정산) ① 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의 서면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일부를 임시로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결정(이하	제19조(임시지급 및 정산)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의 서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보상금등의 일부를 임시로 신청인에게	제18조(임시지급 및 정산)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의 서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보상금등의 일부를 임시로 신청인에게

“임시지급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서면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임시로 지급받은 금액이 확정된 보상금등보다 큰 경우 그 차액 및 「민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받은 날부터 보상금등이 확정된 날까지의 이자는 제외한다.	“임시지급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서면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임시로 지급받은 금액이 확정된 보상금등보다 큰 경우 그 차액 및 「민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받은 날부터 보상금등이 확정된 날까지의 이자는 제외한다.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임시로 지급받은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보상금등보다 큰 경우 그 차액 및 「민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받은 날부터 보상금등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까지의 이자는 제외한다.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임시로 지급받은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보상금등보다 큰 경우 그 차액 및 「민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받은 날부터 보상금등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까지의 이자는 제외한다.
		제20조(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국가는 제14조의 지급결정 및 제19조의 임시지급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신청인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제19조(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국가는 제13조의 지급결정 및 제18조의 임시지급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신청인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제39조(보상금등 상속의 특례 및 보호)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민법」 제997조에도 불구하고 지급결정 시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본다.	제19조(보상금등 상속의 특례)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민법」 제997조에도 불구하고 지급결정 시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본다.	제21조(보상금등 상속의 특례)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민법」 제997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보상금등 지급 결정 당시의 「민법」을 준용한다.	
제41조(보상금등의 관	제20조(보상금등의 관	제22조(보상금등의 관	

리) 피해자가 고령, 장애 등의 사유로 보상금등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 이용 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에 따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와의 연계, 신탁의 이용 지원 등 보상금등의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이익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37조(보상금등의 분할지급 및 재산관리 교육 등) ① 위원회는 피해자등의 의사와 이익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등에게 재산관리·금융에 관한 교육 또는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지급의 기준·방법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상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리) 피해자가 고령, 장애 등의 사유로 보상금등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 이용 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에 따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와의 연계, 신탁의 이용 지원 등 보상금등의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이익을 존중하여야 한다.	리) 피해자가 고령, 장애 등의 사유로 보상금등의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공공신탁기관을 통한 보상금등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보상금등 상속의 특례 및 보호) ② 보상금등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21조(보상금등의 보호) ① 보상금등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23조(보상금등의 보호)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20조(보상금등의 보호)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③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3조(구상권의 행사)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피해자등에게 보상금등을 지급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그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 사람에게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4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의결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3. 행방불명으로 확			

인된 사람이 생존하고 있거나 해당,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과 관련 없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제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4조(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33조에 따라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 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제21조(소멸시효)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40조(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와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22조(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와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24조(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와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나. 검토의견

□ 제정안들은 보상금등 지급과 관련하여 조금씩 달리 규정하고 있음. 김미애의원안은 보상금등의 종류를 정하면서 구체적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김예지의원안은 별도 보상금등에 대한 조문 없이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남인순의원안은 보상금등의 종류를 정하면서 피해·후유증의 정도와 수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훈기의원안은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을 별도의 조항으로 구분하고 그 산출방법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상금등의 산정기준을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할 경우 기본적인 기준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으므로, 보상금 산정의 핵심 요소는 법률에 기본적인 기준을 두고, 세부적인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망·행방불명, 상이 등 피해유형별로 보상금 산정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도 사망·행방불명, 후유장애, 수형의 경우를 구분하여 보상금의 기준과 상한을 규정하고 있음⁴⁾.

4)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보상금) ① 피해자중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하거나 행방 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여·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이 조에서 “월평균임금”이라 한다)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② 피해자중 제2조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2. 신체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라 월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장애등급·노동력상실률 및 단할인법에 의한 중간이자공

□ 한편, 제정안들은 지급결정에 동의하는 신청인만이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김예지의원안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면 지급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같은 동의절차는 신청인에게 결정금액의 수령 여부를 선택하게 하고, 지급에 관한 의사를 명확히 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음.

다만, 남인순의원안과 이훈기의원안은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김미애의원안과 김예지의원안에는 동의의 법률상 효력, 즉 동의 후 동일한 피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보상금 수령 이후에도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보상금 지급으로 분쟁을 종결하려는 것인지에 관해 입법정책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제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 제3조제6항 및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피해자중 상이를 입은 자가 그 상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생존한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보상금) ①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희생자의 일실회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9천만원

2. 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3. 수형인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수형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을 지급한다.

가.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결정 연도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에 수형 또는 구금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다만,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② 후유장애자로 결정된 사람이 그 후유장애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 참고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하고 있음.⁵⁾ 제정안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음.

□ 다음으로, 제정안들은 보상금등에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피해회복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상금등에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보상의 실질적 효과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해당 두 법률 및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을 제외하고는 조세특례·지방세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⁶⁾, 조세 면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법률의 개정 필요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심의위원회의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5. 명예회복 및 사회적 치유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들은 추모·기념사업, 공익기금조성, 차별·혐오금지, 피해 회복지원센터, 재발방지대책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미애의원안, '26.7.29. 발의)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예지의원안, '26.3.31. 발의)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 (남인순의원안, '26.3.25. 발의)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특별법안 (이훈기의원안, '25.11.7. 발의)
제49조(추모·기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추모하고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의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추모·기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관·추모공원 건립 2. 위령·추모행사 개최 3. 기록물 수집·전시 4.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추모·기념을 위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모·기념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4조(추모·기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추모하고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의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추모·기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관·추모공원 건립 2. 위령·추모행사 개최 3. 기록물 수집·전시 4.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추모·기념을 위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모·기념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5조(추모·기념사업 및 공익기금조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추모하고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의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관·추모공원 건립 2. 위령·추모행사 개최 3. 기록물 수집·전시 4.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추모·기념을 위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2조(추모사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추모하고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의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관·추모공원 건립 2. 위령·추모행사 개최 3. 기록물 수집·전시 4.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추모·기념을 위한 사업

제50조(공익기금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피해자등 지원 및 추모·기념사업을 위하여 공익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공익기금은 무연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지급되지 못한 보상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개인·법인·단체의 기부금, 기금의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할 수 있다.		제25조(추모·기념사업 및 공익기금조성 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및 추모·연구사업을 위하여 공익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를 그 재원으로 할 수 있다. 1. 무연고 피해자가 진상규명 조사 후 사망하여 지급되지 못하는 보상금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개인·법인·단체의 기부금 4. 기금의 운용수익	
제52조(차별·혐오 금지) 누구든지 피해자등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혐오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차별·혐오 금지) 누구든지 피해자등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혐오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차별·혐오 금지) 누구든지 집단수용시설등 피해자 또는 유족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혐오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피해회복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자등의 심리적 회복 및 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피해회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피해자등의 심리적 회복 및 사회적 활동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2. 제2항에 따른 지역피해회복지원센터의 지원 및 그 종사자 교육 3. 그 밖에 피해자등의 회복을 위하여	제26조(피해회복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자등의 심리적 회복 및 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피해회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피해자등의 심리적 회복 및 사회적 활동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2. 제2항에 따른 지역피해회복지원센터의 지원 및 그 종사자 교육 3. 그 밖에 피해자등의 회복을 위하여	제27조(피해회복지원센터) ①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등의 심리적 회복 및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피해회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피해회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리치료 및 상담 지원 2. 자립생활 지원 3. 사회적 활동 지원 4. 법률 상담 및 지원 5. 그 밖에 피해자	제23조(피해회복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역별로 피해회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회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리치료 및 상담 지원 2. 자립 지원 3. 법률 상담 및 지원 4. 그 밖에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업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자등의 심리적 회복 및 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피해회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심리치료 및 상담 지원 2. 자립생활 지원 3. 사회적 활동 지원 4. 법률 상담 및 지원 5. 그 밖에 피해자등의 회복을 위한 업무 ③ 지역피해회복지원센터는 피해자등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립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중앙피해회복지원센터 및 지역피해회복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과거사 지원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집행하고 피해자등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자등의 심리적 회복 및 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피해회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심리치료 및 상담 지원 2. 자립생활 지원 3. 사회적 활동 지원 4. 법률 상담 및 지원 5. 그 밖에 피해자등의 회복을 위한 업무 ③ 지역피해회복지원센터는 피해자등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립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중앙피해회복지원센터 및 지역피해회복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복을 위한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중앙피해회복지원센터의 업무를 각 지역별로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지역에 지방피해회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중앙피해회복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지방피해회복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과거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보상·지원 결정사항의 집행 2. 피해자등의 피해회복 관련 현황 파악 및 지원사업의 시행 3. 피해자등 단체와의 협력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피해자등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지원단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제5조제2항의 업무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제29조(피해자 명예회복) 국가는 규명된 진상에 따라 피해자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7조(재발방지 대책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집단수용시설등에서의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법령·제도의 개선 2. 시설 운영 및 관리·감독 체계의 개선 3.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책 개선 4. 집단수용시설등과 유사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산 관리·감독체계의 개선 5. 그 밖에 재발방지	제23조(재발방지 대책의 권고 등) ① 심의위원회는 집단수용시설등에서의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법령·제도의 개선 2. 시설 운영 및 관리·감독 체계의 개선 3.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책 개선 4. 그 밖에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		

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48조(집단수용시설등 운영 법인 등의 존속 또는 동일성·승계 심사 등) ① 위원회는 집단수용시설등을 운영하였던 법인 등(이하 “운영법인등”이라 한다)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거나 운영법인등의 조직·재산·인적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른 법인·단체 등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거나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심사·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운영법인등의 존속 또는 동일성·승계가 인정된다고 의결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			

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 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의결 시 운영법인등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그 밖에 운영법인등의 존속 또는 동일성·승계 심사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나. 검토의견

□ 김미애의원안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접수 제한⁷⁾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7)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음. 피해자 지원과 기념사업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러나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피해자·유족 결정 및 보상금등 지급 결정을 담당하는 한시적 조직으로서, 기부금품을 지속적으로 접수·관리·집행하는 주체로 적절한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기탁금품의 접수 및 사용에는 회계처리, 수입·지출 관리,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 처리 및 기부자에 대한 공개·보고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위원회는 활동기간 종료 후 해산 또는 기능 축소가 예정되어 있어 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음.

유사 입법례를 보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및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기탁금품의 접수 주체를 진상규명 위원회가 아닌 관련 재단으로 정하고 있음⁸⁾.

- 김미애의원안은 사건과 관련한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고, 피해자와 유족이 피해자 결정 및 보상금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피해자·참고인 등이 보복이나 사회적 낙인을 우려하여 진술을 주저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와 권익을 보호하려는

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8)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4·16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72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제71조에 따른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취지로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김미애의원안의 경우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이 없어 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6. 보칙 및 벌칙 등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들은 위원회 위원·직원·감정인 등의 비밀준수의무, 자격 사칭 금지, 피해자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유사명칭 사용금지, 벌칙에서의 공무원 의제 등의 보칙과 벌칙 및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미애의원안, '26.7.29. 발의)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예지의원안, '26.3.31. 발의)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 (남인순의원안, '26.3.25. 발의)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특별법안 (이훈기의원안, '25.11.7. 발의)
제55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위 원회의 직원이나 직 원이었던 자 및 제22 조제2항에 따라 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 (그 종사자를 포함한 다)는 직무를 수행하 면서 알게 된 위원회 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 거나 그 밖에 위원회 의 업무 수행 외의 목 적을 위하여 이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비밀준수 의무)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심의위원회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및 제8 조제2항에 따라 사실 조사 업무를 위탁받 은 자(그 종사자를 포 함한다)는 직무를 수 행하면서 알게 된 심 의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 ·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업무 수 행 외의 목적을 위하 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비밀준수 의무)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심의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심의 위원회의 위촉에 의 하여 조사에 참여하 거나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 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심의위 원회의 비밀에 해당 하는 정보·문서·자 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 설하거나 그 밖에 심 의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24조(비밀준수 의무)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심의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심의 위원회의 위촉에 의 하여 조사에 참여하 거나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 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심의위 원회의 비밀에 해당 하는 정보·문서·자 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 설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 적을 위하여 이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불이익 처우 금지) 누구든지 집단수 용시설등 인권침해사 건과 관련하여 자유			

롭게 발언할 수 있으며, 피해자들은 위원회의 결정 및 보상금 등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57조(자격사청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피해자들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을 하거나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자격사청 금지) 누구든지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피해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피해자들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을 하거나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자격사청 금지) 누구든지 심의위원회의 위원·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피해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을 하거나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자격사청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심의위원회의 위원·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7조(자격사청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 ② 위원회가 아닌 자는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심의위원회가 아닌 자는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 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0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심의위원회가 아닌 자는 심의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6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위원			

회는 제20조에 따른 진상규명결정, 제28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보상금등의 지급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 2.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직원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원·직원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이나 위계로써 사실조사를 방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제27조(벌칙) ①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 및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를 위반하여 심의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5조를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 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2.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 3.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자	에 처한다. 1. 제27조를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심의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업무 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2. 제28조를 위반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 3. 제30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를 위반하여 심의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 3. 제31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	하여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
제61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3항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지	제33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심의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술(진술서 제출을 포함한다)을 한 참고인이나 심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 또는 물건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9조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심의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술(진술서 제출을 포함한다)을 한 참고인이나 심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7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

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2.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52조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혐오표현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방해한 자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29조를 위반하여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9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3. 제30조를 위반하여 심의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26조를 위반하여 집단수용시설등피해자등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혐오표현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한 사람 ②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에 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의 규정은 2027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의 임명·위촉, 사무국의 설치, 위원회의 규칙의 제정·개정·공포, 위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의 임명·위촉, 사무국의 설치, 심의위원회의 규칙의 제정·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사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심의위원회의 규칙의 제정, 심의위원회의

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개정·공포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무국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설립 준비행위 등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본다.
제3조(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임명·위촉된 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임명·위촉된 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에 따라 임명된 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소멸시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소멸시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이미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와 관련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소송은	제5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써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규명결정	제5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써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집단수용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배상절차로 전환할 수 있다.	을 받은 집단수용시설 등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집단수용시설 등 인권침해와 관련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소송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배상절차로 전환할 수 있다.	설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집단수용시설 등 인권침해 관련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배상절차로 전환할 수 있다.	
--------------------------------------	--	---	--

나. 검토의견

□ 제정안들 벌칙조항의 업무상 비밀 누설 시 부과되는 형량(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한 벌칙과 그 외 유사 입법례⁹⁾를 고려했을 때 적절한 수준으로 보임.

□ 또한, 과태료 부과액도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보이나, 남인순의원안과 이훈기의원안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을 심의하는 행정청 소속의

9)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2조(벌칙) ①~③ (생략)

④ 제13조에 따른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7조(벌칙) ① (생략)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생략)

4. 제59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내부 위원회는 과태료 부과 주체로 적절하지 않은바, 과태료 부과 주체를 누구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이훈기의원안은 심의위원회를 행정청으로 보는 간주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494